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호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881

발의연월일: 2024. 9. 10.

발 의 자:윤호중・박해철・황정아

윤종군 · 홍기원 · 이기헌

정성호 · 조승래 · 이병진

안도걸 · 조계원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육·교육기반의 확충을 위해 특례 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,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어린이공원, 어린이놀이터, 지역아동센터 등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도 인구감소지역 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 등의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복지법」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아동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,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행정 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아동복지시설의 확충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복 지법」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아동복지시설을 우선적 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아동복지시설 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1조의2(아동복지시설의 확충)
	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
	「아동복지법」 제50조제1항에
	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아동복지
	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
	<u>있다.</u>
	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
	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아동복
	지시설의 관리 · 운영에 필요한
	행정적・재정적 지원을 할 수
	<u>있다.</u>